

의안 번호	2100	【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2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26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6. 9.(금)

2. 제안이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운영경비 지원 근거 추가(안 제6조 제5호)
- 타 근거 조례명 수정(안 제7조)
- 용어 및 조문 정비(안 제3조 ~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제16조

5. 검토의견

- 중구 재향군인회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

제16조(재정)

-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